



제외 근로자 기금

2021년 7월 업데이트됨

제외 근로자 기금(Excluded Workers Fund, EWF)은 COVID-19 전염병 기간 동안 소득을 잃고, 실업 수당 및 전염병 수혜 등 다양한 연방 구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뉴욕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WF 업데이트는 on.ny.gov/ewfsubscribe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EWF로부터 기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를 위한 신청 절차는 2021년 8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접수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하려면 ewf.labor.ny.gov를 방문하십시오.

모바일 장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13개 언어로 제공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뉴욕 주는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dol.ny.gov/CBOList를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877-EWF-4NYS (877-393-4697)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대화하고 가까운 위치를 찾으십시오.

800-662-1220 TTY/TTD – 영어
877-662-4886 TTY/TTD – 스페인어

제게 자격이 있나요?

EWF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뉴욕 주에 거주했고 계속해서 뉴욕 주에 거주한다는 사실;
- 실업 보험, 또는 기타 COVID-19 소득 구제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기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 2021년 4월 이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26,208 미만이라는 사실; 및

- 2020년 2월 23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의 특정 시점에서 전체 또는 부분 실업, 또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당 근로 관련 수입 또는 가구 수입의 최소 50%를 잃었거나, 가장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신원, 거주지 및 업무 관련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는 신원 및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동일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원 및/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중 적어도 한 문서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문서에는 신청자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모든 문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발급 기관의 인증을 득할 것
- 만료되지 않았을 것(아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영문으로 또는 공인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공될 것
-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았을 것

내 신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청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문서에는 점수가 부여되며 모든 신청자는 4점 이상을 득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상기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뉴욕 주 운전 면허증(4점)
- 뉴욕 주 비운전자 ID 카드(4점)
- 미국 여권(4점)
- IDNYC 카드(4점) - (2020년 만료된 카드는 2021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만료되는 카드는 만료일 이후 1년의 갱신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외국인 발급 여권(3점)

- 뉴욕 주 DMV에서 발급한 뉴욕 주 임시 운전면허증 (3점)
- 미군 ID 카드(3점)
- 뉴욕 주 지방 정부, 뉴욕 주 정부 기관 또는 연방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ID 카드(3점)
- 뉴욕 주 고등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ID 카드(3점)
- 뉴욕 주 정신 건강국에서 발급한 뉴욕 주 입원환자 사진 ID 카드(2점)
- 만료된 미국 또는 외국인 발급 여권(2년 이내 만료) (2점)
- 만료된 외국인 발급 운전면허증(2년 이내 만료)(2점)
-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한 문서: 도착/출발 기록(I-94) 또는 조치 통지서(I-797, I-797A, I-797D) (2점)
- 미국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증명서(2점)
- 결혼 증명서(1점)
- 이혼 판결문(1점)
- NYC Parks & Recreation Membership 카드(1점)
- 외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1점)
- 외국인 발급 사진 ID 카드(1점)
- 미국 고등학교, 칼리지 또는 대학교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1점)
- 뉴욕 주의 지방 정부, 뉴욕 주 정부 기관 또는 연방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 없는 ID 카드(1점)
- 직원 사진 ID 카드(1점)
- 일반 과정에서 및 2021년 4월 19일 이전에 받은 자격에 대해 발급된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수급 자격 또는 참여와 관련하여 뉴욕 주 법무장관실 산하 자선 기관에 등록된 자선 단체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신분증(1점)
- 서면 고용 제안서, 급여 명세서 또는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제공한 급여 통지서(1점)

제 거주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청자는 각 문서마다 뉴욕 주 내에서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 다음 문서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는 2020년 3월 27일 이전의 거주 사실 증명과 현재 거주 사실 증명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건의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열거된 첫 다섯 건의 문서를 제외하고, 현재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날짜는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상기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뉴욕 주 운전 면허증(발급 날짜는 현재 거주 사실이 수록된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이내일 수 있음)

- 뉴욕 주 비운전자 ID 카드(발급 날짜는 현재 거주 사실이 수록된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이내일 수 있음)
- 뉴욕 주 IDNYC 카드(발급 날짜는 현재 거주 사실이 수록된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이내일 수 있음. 2020년에 만료된 카드는 2021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만료되는 카드는 만료일 이후 1년의 갱신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뉴욕 주 DMV에서 발급한 뉴욕 주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날짜는 현재 거주 사실이 수록된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이내일 수 있음)
- DTF 또는 IRS의 전자 신고 승인을 포함해 제출 증명서가 있는 주 또는 연방 세금 신고 또는 신고서 (현재 거주 사실을 기재하기 위해 2021년 4월 19일 이전 30일 전에 발급되었을 수 있음)
- 공과금(예: 전기 및 가스 요금, 인터넷, 케이블, 수도, 쓰레기/재활용품 수거비)
-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 신청자에게 발송된 뉴욕시 주택 당국의 서신
- 신청자가 현재 노숙자 보호소에 입소 중임을 증명하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신청자에게 발송된 서신
- 현재 임대 계약서, 모기지 납부 또는 재산세 명세서
-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종교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발송된 서신
- 급여 명세서
- 계절별 주택을 포함해 뉴욕 주에 위치한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을 입증하는 고용 제안서 또는 급여 통지서
- 의료 기관 또는 보험사의 내역서, 청구서 또는 기록
- 뉴욕 주 내 법원에서 발급된 배심원 소환서, 법원 명령서 또는 기타 문서
- 가정 폭력(DV) 거주자 보호 프로그램 또는 DV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에서 발송된 서신
- 뉴욕 주 검찰 총장 자선국에 등록된 자선 단체에서 발급했고, 일반 과정에서 및 2021년 4월 19일 이전에 자격을 받았을 당시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신청자의 뉴욕 주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신
- 뉴욕 주의 지방 정부, 뉴욕 주 정부 기관 또는 연방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발송한 문서

제 근로 자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청자는 아래 제공된 정보 및 문서에 따라 두 가지 금액 중 하나로 EWF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서류마다 점수 값이 있습니다.

\$15,600(세후)의 1등급 금액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5점 이상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200(세후)의 2등급 금액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3점 이상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5점짜리 문서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자는 1등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3점짜리 문서 중 한 건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점짜리 문서 5건을 1등급에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 신청자는 인당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뉴욕 주 세무 신고 자료 제출 사실 증명, (A) 전자 신고에 대한 전자 확인서, 세무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TF 배당 증명서" 또는 세무 및 재무부의 금융 거래 사실을 반영하는 은행 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세무 및 재무부에 2018년, 2019년 또는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뉴욕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명, 및 (B) 유효한 미국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또는 ITIN 및 제출 또는 접수 사실을 입증하는 W-7 신청서에 대한 증명(5점)
- 신청자가 본인이 급여 수혜 자격이 된다고 증명하는 날짜 이전 6개월에 대해 최소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금전적 소득을 득했다는 사실(5점)
- 신청자가 본인이 급여 수혜 자격이 된다고 증명하는 날짜 이전 6개월에 대해 최소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내역서의 상세 내역(5점)
- 임금 또는 소득 내역이 포함된 2019년 또는 2020년 과세 연도의 IRS W-2 또는 1099(5점)
- 신청자가 본인이 급여 수혜 자격이 된다고 증명하는 날짜 이전 6개월에 대해 적정 기간 동안 근로 사실을 문서화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통지서(5점)
- 다음을 포함한 신청자의 근무 날짜와 소득 손실(예: 전염병 관련) 사유를 입증하는 고용주의 서신: (A) 고용주의 우편 주소 및 신청자가 근로를 제공한 뉴욕 주 내의 현장 주소 및 (B) 고용주의 뉴욕 주 실업 보험 계좌 번호 또는 연방 고용 식별 번호(FEIN) 또는 서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주 대표의 연락처 정보(전화 번호 포함)(5점)
- 신청자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 이전에 6개월 동안 6주 이상 뉴욕 주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을 급여에 대해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 해당 기관에서 인정한 불만 관련 문서(3점)

- 고용주로부터 받은 일반 정기에금, 예치금 또는 이체에 관한 기록(3점)
- 고용주 사진 ID 카드(1점)
- 배달 주문서, 작업 청구서, 매매 영수증, 고용주의 지시서와 관련된 기타 서면 통신문(1점)
-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메시지, 또는 신청자와 고용주 또는 고용 당사자 간의 근로 관계 사실을 설정하는 기타 서면 통신문(1점)
- 정기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바꾸었거나 수입 또는 소득에서 자금을 이체한 기록(1점)
- 고용주의 우편 주소, 뉴욕 주 실업 보험 계좌 번호 또는 연방 고용 식별 번호(FEIN), 그러한 고용주의 대표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해 신청자의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발급한 문서(1점)
- 통행료 기록, 주차 영수증 또는 대중 교통 기록 등 직장을 왕래하는 연속적인 통근 패턴을 보여주는 영수증 또는 기록(1점)
- 뉴욕 주 법무장관실 산하 자선기관에 등록된 자선 단체에서 발급한 지원자의 고용 기록을 증명하는 서신으로, 신청자가 의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1년 4월 19일 이전에 지원자에게 직무 관련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접수, 인터뷰 또는 기타 표준 프로세스를 익혔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자료일 것(1점)

참고: 신청자는 본인에게 수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 이전 6개월 기간 동안 6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 당시의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사망 또는 장애로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는 가구의 이전 가장에 대한 근로 이력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 신원 및 거주 사실 증빙 문서는 여전히 신청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망일을 포함해 가구의 이전 가장의 사망 증명서; 또는
- 장애의 날짜 및 성격 등 가구의 이전 가장의 장애 증명. 허용되는 문서의 전체 목록은 dol.ny.gov/ewfregs에 있는 규정의 704.2부 (e)항을 참조하십시오.

"세대주"는 귀택 가구에 재정 지원의 50% 이상 기여했고 사망 당시 또는 장애를 입었을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가구원으로 정의됩니다.

제 신청서 자료는 보호를 받습니까?

고용주로부터 받은 문서를 포함해 EWF 신청서의 일부로 DOL에 제출된 문서는 공공 기록이 아니며 EWF 수당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별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적법한 법원 명령 또는 사법 영장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ICE)을 포함한 타 정부 기관에 그러한 정보를 신청서 처리 외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떤 단계가 진행됩니까?

DOL에서 귀하의 신청서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나 수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DOL은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계정에 로그인하도록 안내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귀하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에 따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또는 문자 알림 날짜와 시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해당 일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이 이뤄집니다.

신청자는 상태 업데이트 또는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계정,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부지런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833) 586-1144(수신자 부담)로 전송됩니다. 이메일 알림은 EWF@labor.ny.gov에서 발송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EWF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877) 393-4697로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DOL은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불 내용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개됩니까?

승인 받은 신청자는 신청서에 제공된 주소로 우송된 Visa® 선불 카드로 일회성 지불금을 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ATM 이용이 가능하고 미국 내 Visa 직불 카드를 받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관리자는 신청일로부터 검토 및 처리에 약 6주에서 8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정보 또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WF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sa 선불 카드는 Visa U.S.A. Inc.의 허가에 따라 MetaBank®, N.A., FDIC 회원사에서 발급합니다. 반복 지불은 없습니다. 카드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자금은 만료되지 않으며 카드 만료일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결정에 대해 거부되었거나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결정이 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즉시 계정에 로그인하고 안내를 따르십시오. 신청자는 결정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72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 버튼을 선택하여 이의 제기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신청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통지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추가 정보 또는 문서 제공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일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이 이뤄집니다.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이의 제기가 승인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데 최대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8월 초에 지원이 시작되면 신청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기금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이 역사적인 21억 달러의 기금이 모두 배정되면 기금은 중단됩니다. 신청자, 커뮤니티 그룹 및 지지자에게 통보되고 신청 절차는 종료됩니다.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공식 노동부 웹 사이트에서만 EWF 혜택을 신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목록을 보려면 dol.ny.gov/CBOlist를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877-EWF-4NYS (877-393-4697)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대화하고 가까운 위치를 찾으십시오.

800-662-1220 TTY/TTD – 영어
877-662-4886 TTY/TTD – 스페인어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도와준다면서 현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아무 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러한 활동은 뉴욕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800) 771-7755번으로 법무 장관 핫라인(on.ny.gov/agfraud)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TDD (800) 788-9898.

노동부로부터 연락은 EWF 업데이트에 등록하거나 EWF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통신문에 주의하십시오.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수령액 전액 몰수 외에 E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근로자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ol.ny.gov/EWF를 참조하십시오.

번역 문서에 대한 중요 정보: 공식 문서는 여기에서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서는 편의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제공됩니다. 언어 번역으로 인한 문서의 영문 버전과의 모든 충돌, 불일치, 실수 또는 명백한 분쟁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